

#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팀 작업실 관리 지침

제정 2014.10.

개정 2015.07.

개정 2019.01.

##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6층에 있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이하 '경기콘랩'이라 한다) 창작팀 작업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창작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작팀 : 소정의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작업실 이용 자격을 취득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문화콘텐츠분야 창작 프로젝트 팀
2. 창업 :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 시행령」 제2조(창업범위)에 따른다.
3. 작업실 : 경기콘랩 6층에 위치한 작업공간을 말한다.
4. 협약기간 연장 : 협약기간이 만료된 창작팀에 대해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절차에 의하여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개시일 : 경기콘랩과 체결한 이용협약서상의 이용 시작일을 말한다.

**제3조(창작팀 작업실 지원 담당자의 의무)** 창작팀 작업실 지원 담당자는 창작팀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창작팀의 성공적인 창작물 제작을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창작팀의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성실하고 신속하게 응대해야 한다.
3. 창작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담당자의 권한 이상의 사안인 경우 신속히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창작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시설관리 및 경비를 철저히 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기타 창작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창업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제4조(이용대상)** 창작팀의 이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문화콘텐츠분야 창작활동 중으로 이용신청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팀(기업) 또는 작업실 이용기간 내 창업이 기대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기업)
2. 경기콘랩 사업화 프로그램에 선정된 지원기업 중 소정의 선발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우수팀(기업)  
\* 후속연계지원의 일환으로 경기콘랩 사업화 프로그램에 선정된 지원기업 중 최우수팀(기업)

**제5조(창작팀 지원)** 진흥원은 창작팀 대상으로 아래 각 호를 지원한다.

1. 이용시설(창작팀 작업실, 회의실, 부대시설 등)
2. 창작물 제작 및 향후 창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포함한 유·무형의 서비스

**제6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진흥원이 창작팀의 선정, 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 제 2장 창작팀 선정 및 협약

**제7조(창작팀의 선정)** ① 창작팀은 공개모집 또는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모집하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② 선정된 협약팀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퇴실 등으로 인해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모집을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③ 제4조(이용대상)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정의 선발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8조(이용협약 체결)** ① 창작팀은 선정 확정시 진흥원이 정한 날까지 「이용협약」을 체결한다.

② 「이용협약」 기간은 기본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창작팀은 「이용협약」 체결과 동시에 본 관리지침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④ 창작팀이 진흥원에 서면으로 퇴실을 통보할 시 이용협약은 자동 취소된다. 세부내용은 진흥원과 창작팀이 정한 「이용협약」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및 통보)**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과 창작팀은 「이용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 기간의 연장이 확정될 경우
2. 본 지침의 개정에 따라 「이용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창작팀의 사정으로 「이용협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창작팀이 이용공간 변경 신청을 하여 공간 변경이 승인된 경우

② 제1항의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창작팀은 「이용협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③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시, 창작팀은 변경내용에 대해 진흥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 기간 연장)** ① 진흥원은 「이용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창작팀은 협약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이용협약 연장 신청서」(별첨 2)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창작팀이 진흥원이 정한 날까지 「이용협약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약기간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용협약」 기간 종료일에 퇴실한다.
2. 진흥원은 창작팀의 요청에 따라 「이용협약」 연장 평가를 수행하며, “합격” 판정을 받은 창작팀에 한하여 「이용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평가의 시기 및 방법은 진흥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협약 기간은 1회(6개월)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시 총 협약기간은 기존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및 소멸)**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창작팀이 진흥원과 합의 없이 「이용협약서」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창작팀이 본 지침 또는 협약 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행하였을 경우
3. 창작팀이 임의로 협약의 권리와 의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창작팀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이용공간을 임의로 용도 변경하여 이용하였을 경우
5. 창작팀이 본 지침 제12조(창작팀 평가)의 창작팀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진흥원의 창작팀 평가에서 평가 결과가 “불합격”인일 경우

② 진흥원은 사업 협약 해지를 확정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창작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창작팀이 협약기간동안 경기도 내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협약은 자동소멸된다.

**제12조(창작팀 평가)**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창작팀을 평가할 수 있다.

1. 진흥원은 창작팀과의 협약기간 내 정기적으로 창작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2. 동 조 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은 창작팀의 프로젝트 진척률, 출석률,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도 등으로 하며 평가 결과는 추후 창작팀이 협약연장 신청시 반영할 수 있다.
  3. 진흥원이 창작팀에게 본 지침 제11조(협약의 해지 및 소멸), 제15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에 따라 경고 조치한 경우 평가에 반영된다.
- ② 정기 평가의 시기 및 방법은 진흥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진흥원은 창작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창작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3장 창작팀 및 작업실 관리 등

**제15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창작팀은 이용공간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부담 등 관련 책임은 창작팀이 진다.

**제16조(창작팀 준수사항)** ① 창작팀은 진흥원이 정한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진흥원이 시행하는 간담회, 설문조사, 지원사업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② 창작팀은 진흥원이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창작팀이 담당자가 고지한 날짜 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창작팀은 진흥원의 경고와 시정 요청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창작팀은 진흥원이 요구한 기한 내에 정기적으로 「정기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작업실 이용비용)** ① 선정된 창작팀이 이용하는 작업실 및 부대시설은 진흥원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진흥원은 창작팀의 창작 작업에 필요한 재료비 등 소모품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18조(퇴실신청)** ① 창작팀은 퇴실예정일 7일 전까지 진흥원에 「창작팀 퇴실 신청서」(별첨 1)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약만료일 14일 전에 협약기간 연장을 위해 「협약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창작팀은 퇴실 전 시설물 일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창작팀에서 부담한다.

**제19조(강제퇴실)** ① 창작팀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은 「이용협약」을 해지하고 해당 창작팀을 퇴실시킬 수 있으며, 진흥원은 「시설 이용 제한조치」를 병행하여 퇴실 관련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강제퇴출에 따른 제반비용 발생 시 관련 비용은 퇴출 창작팀이 부담한다.

1. 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2. 「이용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이용시설을 허위 명의로 이용할 경우
4. 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타 창작팀의 작업 방해 등 창작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5. 작업실 이용 목적과 상이하거나, 창작 작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 또는 집단행위 및 선동으로 경기콘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7. 창작팀이 작업실 및 기타 경기콘랩 공간 내에 인화물, 폭발성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8. 창작팀이 이용 신청시 제출한 창작계획 대비 프로젝트 진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② 창작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퇴실이 결정되면 진흥원은 심사 후 3일 이내에 해당팀에 퇴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7일 이내에 퇴실시킬 수 있다.

**제20조(반입금지)** ① 창작팀은 작업실 및 부대시설에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

② 진흥원은 작업실 및 부대시설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요구할 수 있다.

③ 애완동물, 주류 등 타 창작팀 작업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진흥원이 반입금지 항목으로 지정한 품목은 반입할 수 없다.

④ 허가 하지 않은 전열기, 냉온풍기, 취사용 기구 등은 반입할 수 없다.

⑤ 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창작팀에게 있으며, 기타 추가되는 사항은 「이용협약서」에 반영한다.

**제21조(방재관리)** 창작팀은 작업실 및 부대시설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이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1. 창작팀은 작업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경기콘랩 공간 내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창작팀은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진흥원에 알려야 한다.
3. 창작팀은 방재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4. 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창작팀에게 있다.

**제22조(출입관리)** ① 창작팀은 출입문 잠금장치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진흥우너에 신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신고 지연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도난 등의 책임은 창작팀에 있다.

② 창작팀은 경기콘랩이 설치한 잠금장치 이외의 다른 시건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흥원과 창작팀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23조(도난 및 기타)** 진흥원은 창작팀의 작업실 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및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24조(작업실 출입)** 진흥원은 보안, 위생, 방법, 방화 또는 구호 등 기타 관리상 필요한 경우 작업실에 출입할 수 있다.

**제25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퇴실, 협약기간 만료의 경우 소정의 기일까지 이용공간에서 소유물을 반출하여 입실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명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진흥원은 임의로 해당 창작팀의 소유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거나 작업실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때 소요된 실비는 해당 창작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손해배상)** 진흥원 또는 창작팀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단,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면책사항)** 협약기간 동안 창작팀의 잘못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은 창작팀에게 있으며 진흥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이용협약 연장 신청서

창작팀명		이용공간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	
신청자 성명		신청자 연락처	
신청자 이메일			
창작팀	구성원수	명	
	프로젝트명	창업여부	O / X
추진계획대비 현재 진척률			
기타실적		※필요한 경우, 칸을 더 추가하여 작성 가능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팀 작업실 이용협약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귀하**



# ( )차 정기 성과 보고서

20 . . . . .

창작팀명		이용공간		호	
대표자명		연락처			
창작팀 구성원	분류	사업계획 제출시		현 성과보고 시	
	구성원수	명		명	
	인력현황	※구성원 명 팀 내 직책 작성		※좌측과 동일할 시 '좌동'이라고만 작성	
		※필요한 경우 칸을 더 추가해서 작성		※필요한 경우 칸을 더 추가해서 작성	
프로젝트 추진계획	구분 (월별/주별)	사업계획일정		추진현황	달성률 (%)
				※필요한 경우 칸을 더 추가해서 작성	
홍보		보도일자	매체명(블로그 등 포함)	기사제목 또는 내용	
			※필요한 경우 칸을 더 추가해서 작성	※필요한 경우 칸을 더 추가해서 작성	
기타실적		※협약기간 내 수상 또는 기타 선정 실적 등 작성 ※필요한 경우 칸을 더 추가해서 작성 ※사진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			
사업자등록여부		o / x			

※출석률 및 창작팀 관련 사업 참여도 여부는 담당자가 평가